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고 상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후진향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임시활어장 조성공사(전기)		
공 사 개 요	임시활어장 조성공사(전기) 1식 (지상1층, 250㎡)		
공 사 위 치	강현면 전진리 4-13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42,992,000 원	입찰접수시 개찰일	2026. 09. 08. 14:00
기 초 금 액	42,992,000 원	입찰접수시 마감일	2026. 09. 14. 10:00
추 정 가 격	39,083,636 원	개찰일시	2026. 09. 14. 11:00
부 가 가 치 세	3,908,364 원	입찰장소	입찰집행관 사무실PC
도급자설치관급	원	공사구분	전 기 공 사
한 전 불 입 금	원	공사유형	신 설 공 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양양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내에 있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 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전적제출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pm 3\%$ 범위 내에서 입찰집행관이 랜덤정렬방식으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천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가격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입찰)한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입찰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천 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라. 유찰 시에는 재공고 절차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51,546	596,619	59,333	527,348	-	-	-	1,634,846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으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으니, 시공사(계약업체)는 별도 기술지도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모든 공사 해당)

-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포함)」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에 예외사유서 등 이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 관리

-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및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나.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의 공사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양양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을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 해양수산과 이연평(033-670-2414)

11.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대상

- 가. 낙찰자는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임금지급계획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는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근거 및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양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 사용

12.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회계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군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 등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아. 공고·입찰 및 계약체결 : 세무회계과(033-670-2272)

2026. 09. 08.

양 양 군 (분임) 재 무 관